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7

2019.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9. 5. 31.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9. 6. 3.
4.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7.)
   - 의결

Ⅱ. 제안설명 (재무국장 : 하철승)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

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예산액은 2,457억원이고, 이 중 35건, 394억원을 지출결정하여, 386억원을 지출하였음

○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총 1,970억원이며, 이 중 30건 307억원을 지출결정하여, 301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사용내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53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판결금 49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487억원을 편성하여, 5건 8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 주요 사용내역은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21억원, 지하철9호선 2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 판결금 2억원 등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개요

○ 예비비는 당초 2,4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393억 9,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6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1〉 예비비 지출 결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소계	245,728	39,399	38,846	-	553
일 반 회 계	196,981	30,678	30,125	-	553
특 별 회 계 주1)	48,746	8,721	8,721	-	-

※ 주1)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2. 검토요지

○ 예비비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결과에 대해 별도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받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1,96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1,969억 8,2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비비 2,457억 2,800만원에 대해 통계목 기준 35건, 393억 9,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8억 4,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1,969억 8,200만원중 30건, 306억 7,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01억 2,500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3-2〉 예비비 지출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2018	소계	245,728	39,399	38,846	0	553
	일반회계	196,982	30,679	30,125	0	553
	특별회계[주1)]	48,746	8,721	8,721	0	0
2017	소계	208,874	10,462	10,227	0	234
	일반회계	174,016	4,548	4,313	0	234
	특별회계	34,858	5,914	5,914	0	0
2016	소계	192,210	135,902	135,654	0	249
	일반회계	152,030	129,230	128,982	0	248
	특별회계	40,180	6,673	6,672	0	1

주1) '18회계연도의 경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8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63 ('19. 4.12)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임

- 그러나 ’18회계연도의 경우, 통계목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30건, 301억 2,500만원)중 5건(62억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건, 238억 7,000만원이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건으로 확인되는 바

-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배상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지출사례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음

○ 우리 시의회는 이미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비비 지출액의 84.3%가 소송패소 등에 따른 배상금임을 지적하고, 예비비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후속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 서울시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정기적으로 소송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고액소송의 경우 차기년도 패소가 확실시되거나 확률이 높은 경우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사례는 긴급히 발생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킬 수도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 소송은 지난 '17년 9월, 패소함에 따라 사업부서가 '17년 10월, 이미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비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이 필요하였다면, 항소포기 결정을 한 당해 회계연도 즉, 지난 '17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임에도 항소포기 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18년 1월, '1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1억 6,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강동권역 공영차고지조성 관련 소송진행 경과

소송제기	판결	항소포기 결정	예비비 지출
'17. 3. 2	'17. 9.22	'17.10.23	'18. 1.12

○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본부 소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도 '17년 6월과 9월 사업부서가 항소포기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항소포기 이후 다음회계연도인 '18년 1월과 6월 '1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13억 2,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및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건의 경우, 항소포기를 결정한 당해 회계연도인 지난 '17회계연도에 예비비로 배상금 등을 지출하였다면,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자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소송패소에 따라 항소포기결정을 하여 배상금 등의 지출이 확실시될 경우, 항소포기 결정을 한 당해 회계연도에 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의 변경 제도를 활용하고, 부득이 비용부족 등이 발생될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소송관련 비용을 즉시 지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재생본부 소관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비 13억원과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한 것으로 제출됨

- 예비비는 긴급한 지출이나 예산외 초과지출에 한정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예비비 지출은 관리사각지대인 정비구역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사유로 지출결정 된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합목적성을 확보한 지출사례로 사료됨

- 다만, 예비비로 지출결정 된 시설비 13억원의 경우, 7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 된 예비비중 40.0%, 5억 2,000만원이 불용된 바, 일반적인 세출재원의 집행잔액은 회계연도중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표 3-4〉 예비비 지출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지출잔액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	1,300,000 (100.0)	779,377 (60.0)	520,623 (40.0)
〃	사무관리비	240,000 (100.0)	208,605 (86.9)	31,394 (13.1)

-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정 된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예비비는 한정된 재원이며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는 당초의 편성 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에는 동일 사업에 예비비를 반복지출 하는 것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거나 지출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을 검토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함으로써 지출결정 된 예비비중 일부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주1)]
계	39,399 (100.0)	38,846	553	35
복지본부	4,913 (12.4)	4,913	0	2
재무국	837 (2.1)	837	0	2
평생교육국	664 (1.6)	664	0	1
관광체육국	667 (1.6)	667	0	1
시민건강국	514 (1.3)	514	0	2
안전총괄본부	11,492 (29.1)	11,492	0	14
도시재생본부	1,540 (3.9)	988	552	2
도시계획국	200 (0.5)	200	0	1
주택건축국	4,995 (12.6)	4,994	1	2
물순환안전국	165 (0.4)	165	0	1
도시기반시설본부	6,991 (17.7)	6,991	0	5
한강사업본부	232 (0.5)	232	0	1
상수도사업본부	6,191 (15.7)	6,191	0	1

※ 주1) 통계목 기준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747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2,457억 2,800만원 중 393억 9,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88억 4,6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969억 8,2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306억 7,900만원
- 지 출 액 301억 2,500만원
- 이 월 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5억 5,3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64억 4,0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61억 9,100만원
- 지 출 액 61억 9,100만원
- 이 월 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323억 6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25억 3,000만원
- 지 출 액 25억 3,000만원
- 이 월 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0,678,531,000	30,125,306,152		553,224,84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663,692,000	663,691,450		550	2018-06-07	2018-06-22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사용 관련 변상금 납부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3,000,000	1,383,000,000			2018-12-11	2018-12-12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부족분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29,960,000	3,529,960,000			2018-11-27	2018-11-27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부족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	배상금등	287,947,000	287,946,630		370	2018-12-07	2018-12-12	용인정신병원 부당이득반환금 배상금 지급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립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광명소화	장충체육관 운영	배상금등	666,940,000	666,939,880		120	2018-10-18	2018-10-19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재무국 재무과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56,501,000	356,501,000			2018-07-22	2018-07-27	퇴직금 지급금 부족액
재무국 자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배상금등	480,016,000	480,015,080		920	2018-04-07	2018-04-10	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대금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금 및 이자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 도로개설	배상금등	1,324,746,000	1,324,745,950		50	2018-01-10	2018-01-10	민사소송 판결금 등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 도로개설	배상금등	70,154,000	70,153,300		700	2018-06-22	2018-06-25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강동권역공영차고지조성공사	배상금등	161,305,000	161,304,600		400	2018-01-10	2018-01-12	민사소송 판결금 등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4공구) 배상금	배상금등	591,018,000	591,017,900		100	2018-01-29	2018-01-31	생활기반시설 분담금 반환 소송비용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기자촌~북한산길 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배상금	배상금등	204,224,000	204,223,100		900	2018-01-29	2018-01-30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겸재결 건설	배상금등	1,435,595,000	1,435,594,902		98	2018-05-30	2018-05-31	간전비 중재판정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8공구) 배상금	배상금등	347,288,000	347,287,630		370	2018-07-31	2018-08-02	강남순환 8공구 손실보상 소송판결금 지급

나.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배상금	배상금등	529,843,000	529,843,000			2018-08-02	2018-10-04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 판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 소송	배상금등	5,256,537,000	5,256,536,660		340	2018-11-16	2018-11-19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	환매권상실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등	326,707,000	326,706,840		160	2018-12-20	2018-12-26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광역도로건설(일반회계)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배상금등	705,094,000	705,088,064		5,936	2018-05-30	2018-05-31	공사비(간접비) 소송대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	배상금등	408,731,000	408,731,000			2018-01-29	2018-01-31	공무직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동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배상금등	80,037,000	80,036,130		870	2018-08-17	2018-08-17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예비비 지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240,000,000	208,605,480		31,394,520	2018-06-26	2018-07-04	관리사각지대인 정비구역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	1,300,000,000	779,376,900		520,623,100	2018-06-26	2018-07-04	관리사각지대인 정비구역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매입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4,895,486,000	4,894,292,000		1,194,000	2018-11-02	2018-11-05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비	공공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2018-08-27	2018-09-14	방화택지지구 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정비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	공공운영비	200,000,000	200,000,000			2018-01-29	2018-01-30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간접강제 집행정지 담보 공탁금 지급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방대책 사업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간접비	배상금등	164,743,000	164,743,000			2018-01-29	2018-01-30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도시기반시설관리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배상금등	2,691,594,000	2,691,593,824		176	2018-09-06	2018-09-07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소송 판결금(1심)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도시기반시설관리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1,819,767,000	1,819,766,758		242	2018-10-23	2018-10-26	9호선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청구 소송판결금 사용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배상금등	225,778,000	225,777,140		860	2018-10-12	2018-10-15	소송 배상금 지급

나.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소송비용	배상금등	231,828,000	231,827,934		66	2018-05-11	2019-05-21	판결금 지급

나.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2,479,486,000	2,479,484,753		1,24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 소송판결금	배상금등	165,089,000	165,088,870		130	2018-03-06	2018-03-09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비 소송 판결금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	배상금등	2,125,427,000	2,125,426,348		652	2018-03-19	2018-03-20	7호선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188,970,000	188,969,535		465	2018-12-20	2018-12-21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판결금

나.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도시개발특별회계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50,250,000	50,250,00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배상금등	50,250,000	50,250,000			2018-10-16	2018-10-26	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